

## 전공교육과정 운영위원회 규정(4-4-18)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제29조 및 동 시행세칙 제40조에 의거 전공교육과정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 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본교 전임교원 중 단과대학 학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, 간사는 교무팀장이 된다.

**제3조(임기)**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있다. 단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4조(회의소집 및 의결)**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5조(심의사항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전공 교육의 목표설정
- ② 전공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③ 전공 교육과정의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
- ④ 기타 전공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**제6조(회의보고)** 위원장은 위원회의 임무수행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기타)** 기타 사항은 전공교육과정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0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